
- 감사부적정 사례로 보는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매뉴얼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본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매뉴얼」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공사), 2억원 미만(물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기능보강사업을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담당자를 위해 작성되었기에
법적 효력을 갖지 아니하며,
본 매뉴얼 상 법령 등 규정은 반드시 최신 규정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01 ————— **기능보강사업의 이해**

- 기능보강사업의 선정 3

02 ————— **기능보강사업 계약 단계**

- 입찰 및 계약 9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물품 구매 16
- 공사의 분할계약 및 시공사격 17
- 계약방법 대표 부적정 사례 18

03 ————— **기능보강사업 사업추진 단계**

- 기능보강사업의 계획 변경 21
- 공사감독 미이행 23
- 사업추진 대표 부적정 사례 24

04 ————— **기능보강사업 사업완료 단계**

- 기능보강사업의 정산 27
- 사업완료 대표 부적정 사례 29

05 ————— **기능보강사업 사후관리 단계**

- 시설물의 안전점검 33
- 기능보강사업의 하자관리 35
- 기능보강사업의 중요재산 관리 38
- 사후관리 대표 부적정 사례 40

01 기능보강사업의 이해

- 기능보강사업의 선정

기능보강사업의 선정

1. 기능보강사업의 개념

- 1) 정의 : 사회복지시설의 환경개선·기능보강 비용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 2) 종류
 - 장애인거주시설 지원내용(보건복지부 2022년도 기능보강사업 예산계상 기준)

구 분		지원내용	비고
신축	유형별	900㎡(최대) × 1,397,000원 (개소당 30인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 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등 제반 수수료 자부담 · 시설의 소규모화를 위한 지역사회 내 아파트 등 기존건물 매입비(200백만원 이하) 지원가능 ·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장애인쉼터
	단기	300㎡(최대) × 1,397,000원 (개소당 10인 기준)	
	장애인쉼터	200㎡(최대) × 1,397,000원 (개소당 8인 기준)	
	공동생활	120㎡(최대) × 1,397,000원 (개소당 4인 기준)	
증·개축	개소당 지원단가 : 1,397,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별·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수준 결정 · 정원 30인 이상 시설 제외(구체적인 소규모화 추진계획 제출 시 가능)
개보수	개소당 지원단가 : 1,397,000원/㎡ 초과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별·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수준 결정 · 건물 안전·소방설비 등 우선 선정 (직통계단, 배연창 등)
장비보강	시설별·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 수준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축시설에 대한 필수장비 지원(총액 2억원 이내) · 시설 이용자의 재활에 필요한 장비 구입 · 소방·안전 대비 필수 장비 구입/추가 설치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내용(보건복지부 2022년도 기능보강사업 예산계상 기준)

구 분	지원내용		비고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신축	1,164.9㎡(최대) × 1,397,000원 × 50%	518.1㎡(최대) × 1,397,000원 ×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의 전부 신축은 시설당 1회만 지원 · 토지구입비는 지원하지 않음 · 사업 준비도 등에 따라 연차별 분할 지원 가능
증축	363㎡(최대) × 1,397,000원 × 50%	297㎡(최대) × 1,397,000원 ×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구입비는 지원하지 않음
개보수	231㎡(최대) × 698,000원 × 50%	130㎡(최대) × 698,000원 ×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안전 등 긴급성 및 생산품 관련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실 소요단가 적용 가능 · 자가건물에 한하여 지원
장비보강	35,000,000원 × 50% 내외	35,000,000원 × 50%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안전 등 긴급성 및 생산품 관련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실 소요단가 적용 가능
임차료	건물 임차보증금 실 소요단가 범위내 ×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설치 시설에 대한 임차료 지원 불가

2. 기능보강사업의 선정

가. 지원기준(국비 50%, 지방비 50%)

1) 지원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군·구립 시설,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시설 신축 등을 계획 중인 사업자(지방자치단체 포함)

2) 지원제외 사업

- 장애인거주시설 : 최근 3년간 2회 이상 기능보강사업 지원을 받은 곳 / 진정·감사 등을 통한 국고(지방) 보조금 횡령 등 사건 발생(5년 내) / 장애인학대 등 인권침해 사례로 행정 처분 등 조치대상시설(5년 내) 등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직업재활시설 본래 목적과 관계없는 사업 /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설비·장비의 교체 / 이용자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사건 등이 발생한 시설 / 불법 건축물 등 관련 제법규의 위반 우려가 있는 사업 등

나. 사업대상의 선정

1) 선정방법 : 시설별 사업의 타당성·적정성·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대상 선정

2) 기능보강사업 흐름

사업계획 수립		사업 타당성·적정성 검토 및 신청		종합검토 및 우선순위 선정		보조사업 확정 통보
보조사업자	→	사군	→	道	→	보건복지부
입찰 및 계약		사업추진 및 관리감독		사업완료 및 정산		사후관리
보조사업자	→	사군	→	道	→	보조사업자

3) 검토사항

- 시·군 검토사항

- 사업 타당성(예산지원 필요성, 시급성 등), 적정성(사업규모, 추진일정, 부지확보 등) 조사
- 신청 법인 등의 관계법령 위반 행위(인권침해 등) 여부 / 신청 법인의 자부담 능력 등

- 道 검토사항 및 우선순위 선정

- 신청사업의 타당성·적정성, 집행가능성 여부 종합 검토
- 우선순위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한 道 **우선순위 선정(공정심사를 위해 시설명 블라인드 처리)**

- 보건복지부 검토사항(보건복지부 2022년도 기능보강사업 예산계상 기준)

■ 장애인거주시설

구 분	검토내용
우선지원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 소방·안전 관련 우선 지원(화재 등 재난사고 대비 인명피해 최소화 위한 직통계단 및 배연창 설치 예산 등) · 안전점검 결과(국토안전관리원 시행)에 따른 “중대 결함시설”을 포함한 안전 위험군에 속한 시설 · 가정형 소규모시설 확충 등 거주시설 기능개편 지원 · 소규모화 정책 추진에 따라 30인 이하 시설 우선 지원
사업대상 제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2회 이상 기능보강사업 지원을 받은 곳 · 5년 내 진정·감사 등을 통한 국고(지방)보조금 횡령 등 사건 발생 · 5년 내 장애인학대 등 인권침해 사례로 사법기관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행정처분 등 조치대상 시설 <p>* 단 긴급한 안전관련 예산 지원 가능</p>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구 분	검토내용
우선지원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축)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는 시설 · (신축)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없는 기초지자체의 시설 · (신축)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있으나, 특정 유형 시설만 편중되어 기타유형 시설을 신설하고자 하는 지역의 시설 · (신축) 장애인의 생산참여 및 고용임금 등을 고려한 생산품목 선정과 이에 대한 판로·시장분석 등이 적절히 선행된 사업 * 직업적응훈련시설의 경우, 훈련프로그램 및 전이계획의 적절히 마련된 사업 · (신축) 운영법인 등 시설 운영주체의 자부담율이 큰 사업 · (증축) 사업규모나 이용자 규모가 증가되어 시설 확장이 불가피한 시설 · (개보수) 노후, 재난 등으로 시설 및 이용자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예상되는 시설 · (장비 등) 제도·정책의 변화로 설비, 품목 등의 변화가 불가피한 경우
사업대상 제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재활시설 본래 목적과 관계가 없는 사업(지역주민 체육·문화시설) · 소모성 비품, 사무용 PC·집기, 저가(低價)의 생산장비 등 ·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설비·장비의 교체(조달청 고시 제2016-40호 참고) * 내용연수 미도래 장비라도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경우, 외부 요인으로 복구 불가한 고장 등이 일어난 경우는 소명자료 제출에 의해 반영가능 · 이용자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사건 등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이를 은폐한 시설이 신청한 사업 * 관련 언론보도, 감사결과, 행정처분, 수사내용 등 참고 · 신규 설치 시설의 임차료 · 관련 제법규의 위반 우려가 있는 사업(불법 건축물 등)

02 기능보강사업 계약 단계

- 입찰 및 계약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물품 구입
- 공사의 분할계약 및 시공자격
- 계약방법 대표 부적정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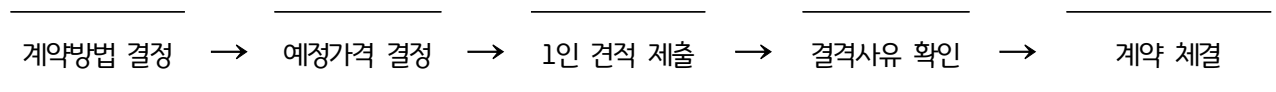
입찰 및 계약

가. 계약의 방법

1) 수의계약

- 1인 견적 제출 가능 수의계약

- 법령에 따라 적합한 계약상대자를 임의로 결정, 견적서를 제출받아 거래실례가격(조달청장이 조사·통보한 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한국물가정보 등)이 조사·공표한 가격 등과 비교·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을 결정



□ 결격사유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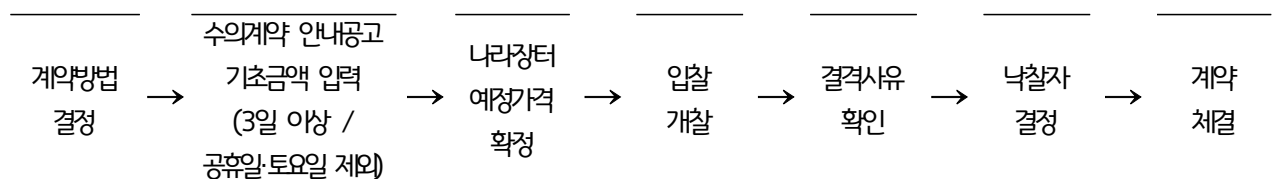
- 나라장터 : 수요기관 업무 → 용역 / 공사 / 물품 → 업체정보 → 조달업체 정보조회(건설업 등록 등 업종 확인)
- 대한건설협회(종합건설업) 및 대한전문건설협회(전문건설업) 홈페이지 조회
- 나라장터 부정당업자 조회(부정당제재 확인 등), 지연배상금, 불법하도급 등 수의계약 배제사유 여부 확인
- 나라장터 미조회시 건설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증빙자료 확인

-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 경쟁입찰과 유사하게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이상의 최저가격을 제출한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

* 지정정보처리장치 : www.g2b.go.kr, www.s2b.kr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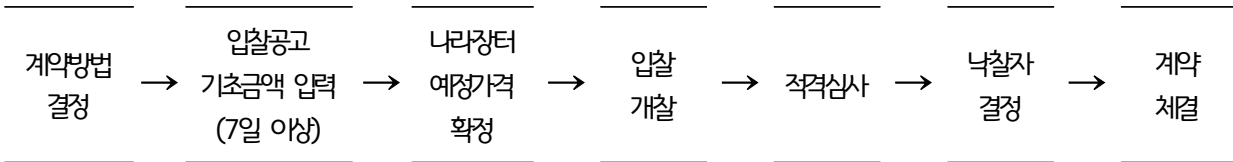
** 낙찰하한율 : 공사 87.745%, 용역·물품 88%(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는 90%) 이상



☞ 사례

- “***시설”에서는 건축공사(실내 인테리어)의 사업자 선정을 위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2인 이상 견적을 받지 않고, 2013. 10. 14. ***** (대표 ***)와 계약금액 37,000,000원에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천정몰당시공 등을 위해 2013. 11. 1.에 7,000,000원을 증액하여 44,000,000원에 변경 계약을 체결

2) 경쟁계약 : 계약의 조건을 공고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불특정 다수인을 입찰에 참여시키는 방식



- 일반경쟁입찰 :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를 입찰에 참가하도록 한 후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는 방식
- 제한경쟁입찰 : 입찰 시 지역, 실적, 시공능력 등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입찰 방식
- 지명경쟁입찰 : 특수한 설비·기술·자재 또는 실적이 있는 자 등 계약의 목적·성질 등의 필요에 따라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입찰에 부치는 방식

※ 나라장터 입찰공고 시 계약방식 선택

☞ 사례

- ***요양원은 '14년 스프링클러설치공사(119,675천원)를 실시하면서 공개경쟁입찰로 계약자를 선정하여야 하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의 제1항 제4호의 가목(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규정)을 근거로 ***전력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수의계약의 적절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지방계약법」에 위배됨 :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업무매뉴얼(시설공사편)

나. 계약방법의 결정

1) 1인 견적 제출 가능 수의계약 대상(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계약 가능)

구분	유형	주요내용				관련규정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밖의공사	용역·물품 기타	
1인 견적 제출 가능	금액기준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여성·장애인·기업·조합 등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 추정가격 : 부가세 제외 금액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 제27조, 제30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건설업의 업종과 업무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하자곤란 등	- 하자구분 곤란, 혼잡, 마감공사 및 특허공법 등				
	천재지변 등	-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 계약을 해제, 해지한 경우 - 재공고 입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등				

☞ 사례

- ****은 재단기 및 곡선엣지 등 장비 구매하면서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였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함
- 「지방계약법」 등의 규정이 준수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 : 2018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특정감사

2)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대상(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

구분	유형	주요내용				관련규정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밖의공사	용역·물품 기타	
2인 이상 견적제출	금액기준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추정가격 1억원 이하	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 제27조, 제30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3) 경쟁입찰 대상

구분	유형	내용				관련규정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밖의공사	용역·물품 기타	
입찰	금액기준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 「지방계약법」 제9조

☞ 사례

- ***복지관은 '14년 체육관 수직 증축공사(예산금액 342,226천원)를 실시하면서 종합건축공사 임에도 홈페이지를 통해 설계서 등을 공개하고 견적 제출하도록 하여 견적에 참가한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설에서 임의로 작성한 예가를 기준으로 3차례 투찰하게 하여 최종 ****와 계약을 체결함. 2억원 이상의 종합공사의 경우 G2B(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 공개경쟁 입찰하여야 하는 「지방계약법」을 위반하였으며, 견적서 제출 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부당한 제한을 금지한 「지방계약법」 위반 :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업무매뉴얼(시설공사편)

다. 입찰공고

□ 나라장터 이용

- 안내문 공고 : 수요기관 업무 → 입찰공고 → 입찰공고입력 → 저장 → 게시
- 기초금액 입력 : 수요기관업무 → 용역 / 공사 / 물품 → 나의공고관리 → 기초금액입력

1) 입찰공고서 작성

- 제목 : ※※※공사·용역 입찰공고
- 내용 : 공사명, 공사현장, 입찰공고기간(7 ~ 30일), 공사내용, 입찰서 제출방법, 참가자격, 현장 설명(생략가능),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의 무효, 개찰, 낙찰자 결정 등
- 입찰방식 : 일반입찰 또는 제한입찰
- 낙찰방법 : 적격심사
- 기초금액 입력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공사에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비
- ※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정보 조회를 통해 타 기관 사례 참조(나라장터-입찰정보-용역 / 공사 / 물품 -공고현황)

2) 입찰 공고 관련 서류

-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입찰참가신청서·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 등), 청렴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등

3) 예정가격 확정(나라장터)

□ 나라장터 이용

- 예정가격 작성 : 수요기관 업무 → 용역 / 공사 / 물품 → 예가작성 → 복수예가작성(15개의 가격 / 무작위 순 저장)

라. 현장설명

- 1) 목적 : 시공에 필요한 현장 상태에 관한 정보 등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입찰 공고 시 공사의 성질 상 현장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생략 가능)
- 2) 시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실시(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인 경우)

마.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1)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

- 적격심사 : 낙찰자 결정시 입찰가격 평가와 함께 시공경험, 경영상태, 접근성, 특별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
- 1순위 대상자 :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7.745%(물품 : 84.2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2) 적격심사 방법

- 시설공사 (적격통과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선정)

구분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합계	100점	100점	100점
수행능력평가	20점	10점	10점
	· 시공경험 : 10점 · 경영상태 : 10점 · 특별신인도 : (+1점) · 접근성 : (+0.5점)	· 시공경험 : 5점 · 경영상태 : 5점 · 특별신인도 : (+1점) · 접근성 : (+0.5점)	· 시공경험 : 4.8점 · 경영상태 : 5점 · 특별신인도 : (+1점) · 접근성 : 0.2점
입찰가격 평가	80점	90점	90점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기술자보유현황 기준미달 등)	△10점	△10점	△10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조

- 물품 (적격통과점수 85점 이상인 자를 선정)

구분	추정가격 2억원 미만	
합계	100점	
물품납품 이행능력	30점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5점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경영상태	·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5점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신용평가등급 : 20점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초기기업 만점 부여
입찰가격	70점	
신인도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2점 ~ -2점(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
	계약이행 성실도	
	계약질서 준수정도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조

3) 적격심사 서류

-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증명서(해당 공사협회 발행)
- 신인도 확인서(여성기업인 등)
- 기술자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 협회 발행)

☞ 사례

- **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2013년 건축공사 기능보강사업 관련 적격심사 시 **개찰결과 1순위 업체인 **종합건설은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 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법정 기술 인력 보유 기준에 미달되어 적격심사 평가기준 중 “그 밖의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사유” 에 해당되어 이를 감점 및 탈락 조치하여야 하지만, 이를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고 심사 후 계약 체결하여 후순위 업체들의 정당한 심사기회 박탈**

☞ 사례

- 계약 절차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등에 의거하여 **입찰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적격 심사 절차 누락 (6개소) : 2020년 「공정복지」 도, 시군 합동 점검 지적사항**

4) 낙찰자 결정

- 낙찰자 결정 통보

바. 계약체결

1) 계약서

- 계약서 작성 :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
 - ※ 「지방계약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서식] 등 참조
- 계약문서 관련서류
 - 용역 : 계약서, 계약보증금(계약보증서 /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필요 시),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 예정공정표, 청렴서약서 등
 - 공사 : 계약서, 계약보증금(계약보증서 /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필요 시), 설계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등), 산출·물량내역서, 예정공정표, 청렴서약서, 건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물품 : 계약서, 계약보증금(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물품계약 특수조건(필요 시), 규격서, 물량내역서, 과업내용서, 청렴서약서 등

2) 계약보증금 납부

- 용역 :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 용역이행보증서(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
 - 공사 :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5/100 이상) / 공사이행보증서(계약금액의 40/100 이상)
 - 물품 :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100 이상)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에 근거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확약서로 대체 가능

☞ 사례

- ***종합지원센터는 계약보증금 면제대상이 아닌 업체와 '16. 11. 10. '***신축공사'를 계약(계약금액 296,997천원)하였음에도 계약보증금이나 공사이행 보증서를 받지 않은 채 지급각서로 대체하여 공사를 진행 :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업무매뉴얼(시설공사편)

3) 지연배상금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에 정한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함
- ※ 지연배상금률 : 공사(0.5/1,000), 물품 구매(0.8/1,000), 용역(1.3/1,000)
- ※ 「지방계약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참조

4) 계약의 담보책임

-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고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하여야 함
- ※ 「지방계약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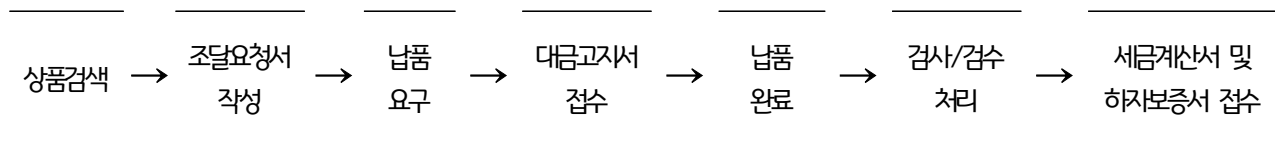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물품 구매

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1) 개념

- 나라장터 쇼핑몰을 이용한 조달물품의 구매는 **조달청이 미리 납품업체와 가격과 구매조건을 확정하였기에 수요기관으로서는 물품구매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고 업체 선정과정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음

2) 쇼핑몰을 이용한 구매 흐름



※ 나라장터 이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3) 제3자 단가계약과 다수공급자계약(MAS)

구분	제3자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성질	· 우수조달제품 또는 수요기관 요청 단가계약	·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
계약방법	· 수의(동일제품 많은 경우 경쟁 가능)	· 경쟁
계약수량	· 구매결의 시 결정된 수량	· 업체계약수량
계약자	· 단일업체	· 다수업체
가격할인	· 없음	· 다량 납품요구량 초과 시
가격인하	· 조달청 단가계약 후 90일 이후	· 수시로 가능
2단계 경쟁	· 없음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납품요구 대상 금액 1억원 이상 의무) · 일반물품(납품요구 대상 금액 5천만원 이상 의무) * 단,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인 경우(1억원 이상 의무, 5천~1억 미만은 선택) · 5개 이상의 납품대상 업체를 선정, 제안서를 받아 평가하여 최고점수업체 선정

☞ 사례

- 행정업무용 컴퓨터 150대를 1억3천5백만원 상당 구매하면서 다수공급자 계약을 피하기 위하여 2회로 나누어 발주하고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예산 낭비 :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업무 매뉴얼(시설공사편)

공사의 분할계약 및 시공자격

가. 공사의 분할계약 및 시공자격

1)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 공사의 분할계약이 가능한 경우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이야 함(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
-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됨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전기공사사업법」 제11조,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제25조,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제21조

☞ 사례

- ***요양원은 '14년 주방 개보수 및 창고 공사(예산금액 46,500천원)를 실시함에 있어 법에서 규정한 전기공사(3,200천원)를 제외한 40,800천원으로 주방 개보수공사의 건축, 설비부분을 일괄 발주해야 하나 이를 분리하여 건축(21,900천원), 설비(18,900천원)로 나누어 진행하여 동일 예산사업을 분리하지 않도록 한 「지방계약법」을 위반 :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업무매뉴얼(시설공사편)

☞ 사례

- ***복지관은 '15년 기능보강사업으로 현관리모델링 공사와 외벽도장 공사를 실시하면서 총 예산 58,850천원을 임의로 3건의 계약(사인(sign)+물(物)공사, 개보수공사, 외벽도장 공사)으로 분리하여 3개의 업체와 각각 수의계약을 체결 :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업무매뉴얼(시설공사편)

☞ 사례

- ***시설은 '14년 내·외부 보수공사(예산금액 47,500천원)를 실시하면서 「지방계약법」에 의거 2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전자공개 수의계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경별로 나누어 각각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으며 특히 같은 업체의 공사비가 2천만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본관과 별관으로 나누어 각각 의도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집행

2)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 공사 종류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 자격이 있는 자가 도급받거나 시공해야 함이 원칙
- 공사에정금액이 **5천만원미만의 종합건설공사, 1천5백만원미만의 전문공사 등 경미한 건설공사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 가능**
- **건설업등록 필요 전문공사** : 가스시설공사,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승강기설치공사, 난방공사 등
-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9조, 제16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 ※ 건설업 등록 확인 : 본 매뉴얼 2. 기능보강사업 계약단계(p9) 결격사유 확인 참조

☞ 사례

- ***복지관은 '14년 석면 텍스 교체공사(예산 37,600천 원)를 실시함에 있어 텍스 설치공사는 전문공사업 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환경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 :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업무매뉴얼(시설공사편)

기능보강사업 계약방법 대표 부적정 사례

☑ 기능보강사업의 계약방법 부적정 사례

☞ 사례

- 사회복지법인 산하시설인 어린이집을 증·개축하면서 종합 공사(건축) 계약금액이 2억원 이상, 전기공사 계약금액이 8천만원 이상임에도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사례

☞ 관련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함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2(계약의 원칙)
 -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함
 -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함
 -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제1항 제5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 이하, 전기·소방·정보통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원 이하의 경우 등은 같은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

☞ 처분내용

- (시정) “***어린이집”에서 2018년도 증·개축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수의계약체결 한 경위 및 금전상의 손실 여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철저히 재조사하여 필요 시 수사 의뢰 및 고발 조치하고, 조사결과를 2개월 내 회신
- (행정처분) “위”건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2 [별표4, 2-4-다]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 요구

* 출처 : 2020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시설 현지조사 사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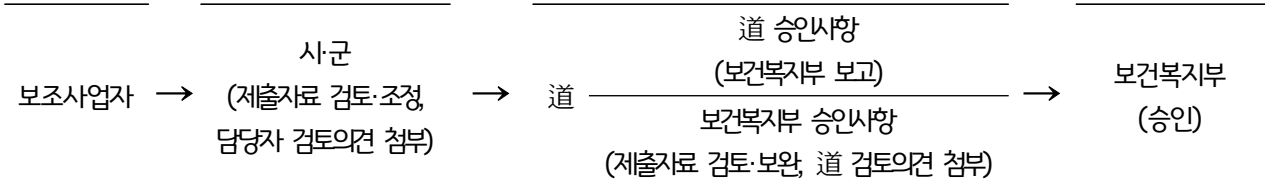
03 기능보강사업 사업추진 단계

- 기능보강사업의 계획 변경
- 공사감독 미이행
- 사업추진 대표 부적정 사례

기능보강사업의 계획 변경

가. 기능보강사업 계획 변경

1) 사업계획 변경 절차



2) 사업계획 변경 승인주체

구분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건복지부	- 낙찰차액 활용사업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총사업비의 13% 이상이고 국비보조금 차액(잔액)의 총액이 20백만원 이상인 경우)	- 신축사업의 부지 변경 - 당초 선정사업과 다른 사업내용으로의 변경 (예시) 당초 지붕방수공사 ▶ 변경) 외벽공사 당초) 1톤트럭 ▶ 변경) 승합차
도	- 설계변경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당초 보조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 자체부담 조정에 따른 사업비·사업량의 변경 - 낙찰차액 활용사업(보건복지부 승인사항 이외)	- 자부담 증가에 따른 총사업비 및 사업량의 변경 사업 - 당초 선정사업에서 발생한 낙찰 차액 또는 집행 잔액* 활용 사업 등 *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의 규모(금액, 비율 등) 무관 - 동일 사업의 사업량이나 규모 등이 변경되는 경우 - 동일 품목 장비의 모델, 사양, 수량 등이 변경되는 경우
시·군	- 공기연장	- '21년도 방역장비 등 일괄지원 사업(보건복지부 지침 있는 경우) (예시) 방역장비 실수요가 없는 시설은 시·군 검토를 거쳐 기타방역장비(공기 청정기 등)로 대체 구입 가능

※ 2021년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참조

☞ 사례

- **시는 ****리모델링 사업의 설계변경 시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보육실·화장실 칸막이를 설치하면서 경기도지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보조금 집행잔액을 집행(주의 요구) : 2018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특정감사

☞ 사례

- **시는 ****이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시 확정된 사업비에서 자부담 금액을 임의로 증액하여 조달 계약의뢰 하고 입찰결과 발생한 낙찰차액 13.1%를 보건복지부 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잔여공사인 설비공사에 활용 하는데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 : 경기도 2018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특정감사

☞ 사례

- **군은 ****이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변경 2건과 사업기간 연장 4건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하자 기간연장만 검토·승인하고 설계변경 2건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승인절차를 미이행(주의 요구) : 2018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특정감사

3) 사업계획 변경 신청 서류

구분	검토서류
장애인 거주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 시·군 공무원 현장 확인 결과 보고서(출장보고서 또는 검토의견서) 및 필요시 기술직공무원(감리원) 설계 검토 의견서 [별지 제6호 서식] - 설계도서, 공사비내역서, 견적서 등 당초·변경 세부자료 - 건축 허가·신고 변경 시 허가·신고필증 - 자부담 변경 시 경비부담자의 기부승락서 및 인감증명서 [별지 제7호 서식]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변경내용 반영) [별지 제2,6호 서식] - 시·군 공무원 현장 확인 결과 보고서(출장보고서 또는 검토의견서) 및 필요시 건축 관련 부서 검토 의견서 [별지 제3호 서식] - 설계도서, 공사비내역서, 견적서, 임대차계약서 등 당초·변경 세부자료 - 건축 허가·신고 변경 시 허가·신고필증 - 자부담 변경 시 경비부담자의 기부승락서 및 인감증명서 [별지 제5호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변경내용 반영) [별지 제4호 서식] - 시·군 공무원 현장 확인 결과 보고서(출장보고서 또는 검토의견서) - 장비 변경사유 서류 [별지 제8호 서식 붙임1] - 변경·추가 장비 견적서(복수), 장비 배치도(도면) 등 당초·변경 세부자료 - 자부담 변경 시 경비부담자의 기부승락서 및 인감증명서 [별지 제5호 서식]

※ 2021년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별지 서식 참조

나.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목적 외 사용

1) 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2) 보조금의 환수

-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 사례

- 장애인거주시설 개보수 기능보강사업을 하면서 동일 건물 내의 장애인시설 용도가 아닌 법인이 운영 관리하고 있는 수익사업용 카페(휴게음식점)에 기능보강 사업비를 부당하게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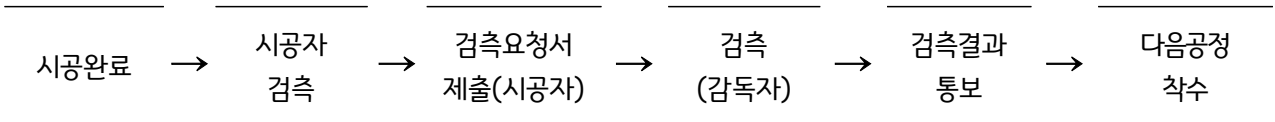
“사회복지시설 *****원” 에서 2016년 보조금으로 개보수 기능보강사업을 하면서 부당하게 목적 외로 사용한 공사비(보조금) 6,270,530원을 환수 조치 요구 (사정) : 2020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시설 현지조사 사례집

공사감독 미이행

가. 공사감독 미이행

1) 공사감독 절차

- 공사감독자는 공사단계별 계약내용,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했는지를 확인하고 검측 실시
- **검측절차를 통한 공정·품질관리가 필요**



☞ 사례

- ***센터는 '14년 난방배관 교체 및 시설 개보수(예산금액 67,195천원)를 진행함에 있어 각 방과 복도의 기존 마감재를 철거하고 단열 작업 후 난방배관 및 마감공사를 하도록 되어있으나, 현장점검 결과 부분철거 후 단열재, 난방 배관 및 마감공사를 시행, 기존 마감재를 완전히 철거하지 않고 단열재의 재질을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음이 확인됨 :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업무매뉴얼(시설공사편)

2) 주요 검측 내용

- 공사 감독자는 공사단계별 계약내역서,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했는지를 확인하고 검측해야 함
-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에 대한 검수와 계약 품질 확인(자재의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함)
- 현장에 반입되는 송장, 납품서 등을 확인하여 수량과 규격 등 검사

* 「지방계약법」 제16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참조

☞ 사례

- ***복지관은 '14년 시설 개보수공사(예산금액 44,714천원)를 실시함에 있어 조리실 개선공사의 경우 계약서(시방서)에 논슬립 바닥재의 수지 몰탈로 마감한다고 했으나, 현장 확인결과 에폭시계 수지로 추정 되는 재료로 마감되어 표면부가 거친 재질이 아닌 매끈한 재질로 준공되어, 계약서와 상이하게 시공된 것으로 판단됨. 특히 조리실 바닥은 상시 물을 사용하는 환경적 특성을 고려할 때 바닥이 미끄러운 재질의 마감은 불안정한 상태로 낙상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임 :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업무매뉴얼(시설공사편)

☞ 사례

- ****은 난방교체공사를 추진하면서 시공업체가 바닥철거 및 타일공사 595.04㎡를 실시한 것으로 준공내역서를 제출하자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공사비를 지급, 이에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면적(516㎡)을 토대로 타일시공 물량 공사비를 재정산한 결과 공사비 4,235천 원이 과다하게 지급되었음에도 위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공사비 회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 2018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특정감사

기능보강사업 사업추진 대표 부적정 사례

☑ 기능보강사업 계획 변경 승인신청서 미제출 사례

☞ 사례

-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기능보강사업은 그 사업계획이 변경 될 경우, 보조사업자는 사전에 중앙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는데, 사전에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 하지 않은 사례

☞ 관련규정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함)
- ◎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됨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처분내용

- (시정) 사업계획 변경 미승인에 대한 사유서 징구 및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 주의촉구 등 행정지도
- * 출처 : 2021년 광주광역시 사회복지법인·시설 기능보강사업 사례집

04 기능보강사업 사업완료 단계

- 기능보강사업의 정산
- 사업완료 대표 부적정 사례

기능보강사업의 정산

가. 기능보강사업 정산 시 확인내용

1) 보험료 등 사후정산

- 간접공사비에 해당되는 제경비 항목은 준공 시점에 별도의 납부확인서(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확인 후 사후정산 실시

구분	확인내용	비고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 공사 현장에서 가입된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증명서	- 모든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2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납입확인서(영수증) 금액 확인 후 사업주 부담금만 정산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 건설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을 위한 집행목적으로 사용 확인 후 정산 (사진대지, 보호구 지급대장, 전자세금계산서 등)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89조 상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60조
환경보전비	- 건설현장 내 환경보전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 등을 위한 집행목적으로 사용 확인 후 정산 (사진대지, 세금계산서 등)	-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61조
퇴직공제부금비	- 공제부금납부확인서 금액 확인 후 정산	-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제9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금액 납입영수증 확인 후 정산	- 해당시 모든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4
건설기계대여금 지급수수료	- 건설장비 대금을 못 받는 것을 대비하여 금액 계상 - 건설기계대여금 보증증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감액 정산	- 해당시 모든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64조의3
일반관리비	- 보험료 등과 연동되어 비율로 지급되기 때문에 보험료 등 감액 비율만큼 감액 정산	
이윤	- 보험료 등과 연동되어 비율로 지급되기 때문에 보험료 등 감액 비율만큼 감액 정산	

2) 안전관리비 사용불가 내역

구분	사용불가내역
인건비	-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업장 주변 교통정리, 민원 및 환경관리 등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
안전시설비	- 원할한 공사수행을 위한 가설시설, 장치, 도구, 자재 등(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 안전발판, 안전통로, 안전계단 등과 같이 명칭에 관계없이 공사수행에 필요한 가시설) - 소음·환경관련 민원예방, 교통통제 등을 위한 각종 시설물, 표지(건설현장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시설, 분진망 등 먼지·분진 비산 방지시설 등)
개인보호구	- 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현장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관계자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 작업복, 방한복, 방한장갑, 면장갑, 코팅장갑 등 *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미세먼지 마스크, 쿨토시, 아이스조끼, 핫팩, 발열조끼 등은 사용 가능
안전진단비	- 민원 처리목적의 소음 및 분진 측정 등, 공사도급내역서에 포함된 진단비용
교육·행사비	- 신문구독 비용, 준공식 등 무재해 기원과 관계없는 행사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 근로자를 위한 급수시설, 정수기·제빙기, 자외선차단용품(로션, 토시 등) *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및 근로자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비, 6~10월에 사용하는 제빙기 임대비용은 사용 가능 - 혹서·혹한기에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보양식·보약 구입비용 * 작업 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 설치·해체·유지비용 사용가능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 참조

☞ 사례

- 사회복지법인 ***은 '12.11~'13.10월 요양원공사를 준공처리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의거 **계약 상대방이 납부한 각종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등) 납입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정산하지 아니하고 최초 계약한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19,076천원을 전부 지급** :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업무매뉴얼(시설공사편)

☞ 사례

- ***시설에서는 '14년 옥상방수 및 배수관공사(예산금액 41,415천원)를 실시하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4천만원 이상(2020년 7월 1일 이후부터 2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4,000천원의 방수공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685천원)를 계약내역서에 명기하여 지급함으로써 관련 규정에 위배되어 **과다 지급** :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업무매뉴얼(시설공사편)

☞ 사례

- ***요양원은 '12년 대수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고 감액된 안전관리비로 지급하여야 하나,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무전기 구입비 720천원과 제설작업이 없는 맑은 날씨 등의 제설작업 인건비 1,200천원(12인×100천원=1,200천원) 등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 2,369천원을 과다 지급** :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업무매뉴얼(시설공사편)

기능보강사업 사업완료 대표 부적정 사례

☑ 기능보강사업 법정 제경비(건강보험료 등) 정산 소홀

☞ 사례

- 공사·용역 및 물품·제조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지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사후 정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투입된 일자와 금액 등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대금을 과다 지급한 사례

☞ 관련규정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2(계약의 원칙)
 -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함
 -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공사의 입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입찰 시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적게 하되,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총액으로 입찰을 실시하되,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제1장(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등 사후정산

☞ 처분내용

- (시정) “사회복지시설 *****집”에서 2018년도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하여 전기·통신분야에서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 총 1,428,318원에 대하여 군비(39.6%)·자부담(60.4%) 비율을 고려하여 군비 565,610원 국고 환수 및 시설회계로 862,708원을 반환 조치하도록 요구
- * 출처 : 2020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시설 현지조사 사례집

05 기능보강사업 사후관리 단계

- 시설물의 안전점검
- 기능보강사업의 하자관리
- 기능보강사업의 중요재산 관리
- 사후관리 대표 부적정 사례

시설물의 안전점검

가. 유지·관리

1) 시설물 유지·관리

-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함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0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11조

2) 건설공사에 관한 서류 및 자료의 유지·보존

- 준공도서, 품질기록, 구조계산서, 시공상 특기사항에 관한 보고서, 사후평가서, 안전점검·안전진단 보고서, 그 밖에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0조

나.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1) 목적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제1종, 제2종, 제3종시설물이 아닌 시설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 실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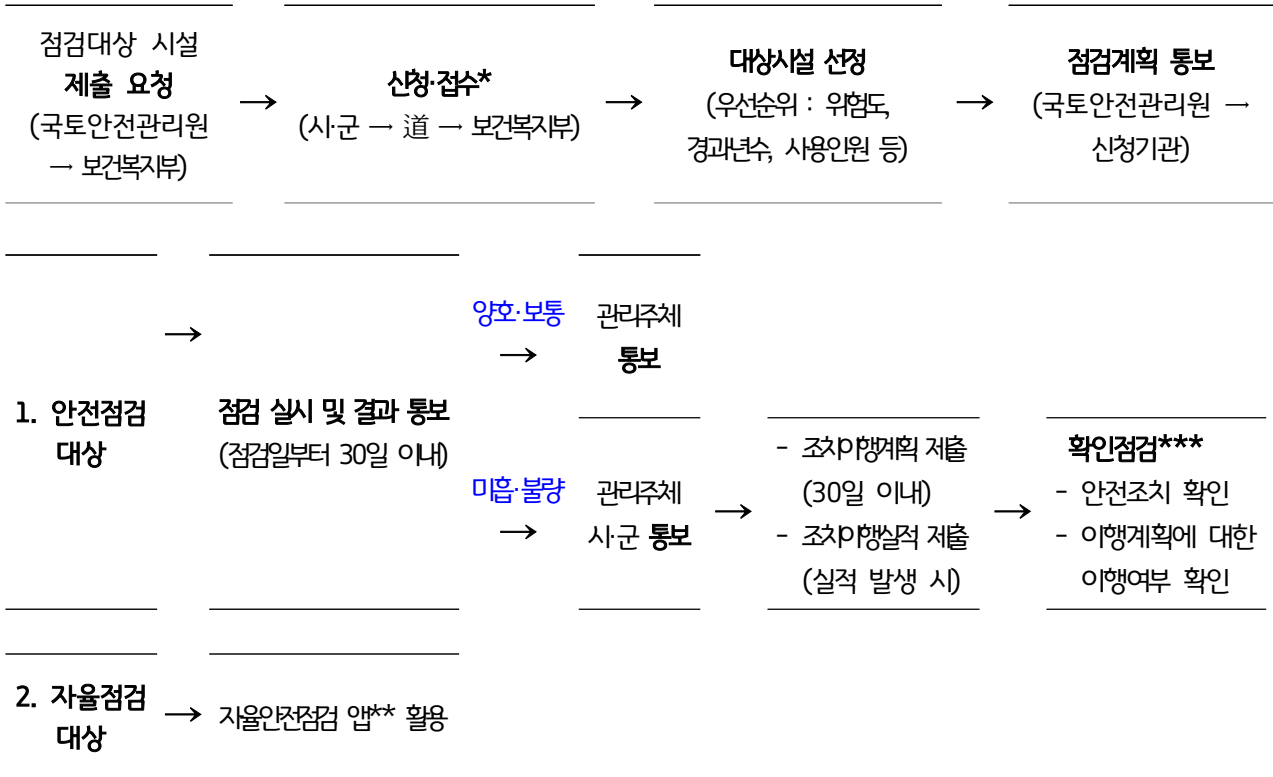
2) 점검 수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의 정기안전점검* 수준으로 실시
- * 정기안전점검 :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에 의한 세심한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으로 육안과 간단한 측정기기로 검사하여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

3) 점검분야 및 항목

분야		점검항목	활용방안
현장 점검	일반사항	- 시설규모 및 일반현황, 설계도서 보유 현황, 유지관리 대장 작성·비치 여부	- 유지관리 기초자료
	건축분야	- 기초지반 침하, 내·외부 균열상태, 주요부재 변형 및 결함상태 - 콘크리트(철근부식 노출, 콘크리트 파손 등), 철골부재 열화, 접합(부식, 내화피복) - 마감재 결함, 배수(지붕, 욕실 등), 누수(지붕, 외벽, 욕실 등),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 상태	- 결함원인 현장교육 - 보수·보강방법 설명
	옥외시설 분야	- 석축, 옹벽, 비탈면 결함 상태, 기타시설물(파고라, 담장 등) 상태 - 시설물(아케이드, 비가림 등) 기초지반 침하 및 시공 상태	
보고서 작성	조치방안 제시	- 발생된 주요 결함의 보수 또는 조치 방안 제시 - 보수·보강 우선순위 선정, 중점 유지관리 대상 선정, 향후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유지관리계획서 작성

4)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절차



* 개별시설 및 지자체에서도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sfms.or.kr)을 통한 안전점검 신청 가능
(회원가입 → 메인페이지 안전점검 신청)

** 자율안전점검 앱 :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sfms.or.kr) 접속 후 정보마당-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시·군 공무원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해당시설의 안전점검 진행사항 모니터링 가능

5) 안전점검 실시시기(소규모 취약시설이 아닌 제1종, 제2종, 제3종 시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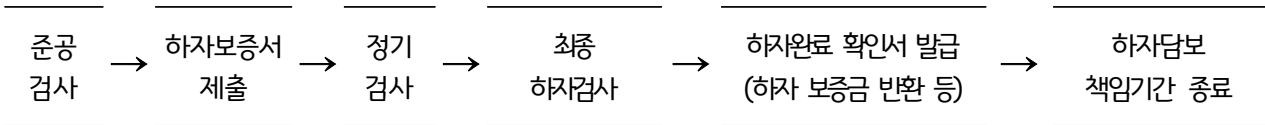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건축물	건축물 외 시설물		
A등급	반기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B·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1년에 3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3 참조

기능보강사업의 하자관리

가. 하자보수 관리

1) 하자 검사



- 정기검사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 최종 하자검사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 실시
 ※ 계약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 작성 생략 가능

☞ 사례

- “사회복지시설 ****” 에서는 2016.06.07. 부터 2016.09.30. 까지 시행한 기능보강사업(증축공사)을 하면서 방수, 토목, 소방, 전기 등 분야별 7건의 세부공사에 대하여 **준공검사일(2016.09.30.) 이후부터 조사일인 2018.07.13. 현재까지 연 2회 이상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 **(주의)** “사회복지시설 ****” 에서 향후 공사가 완료되면 하자보수 책임 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주의 조치 : 2020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시설 현지조사 사례집

2)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기준 :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 공사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구분	공사종류	담보책임 존속기간(참고서식 참조)
1	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
2	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별표 3의2
3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
4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 사례

- ***복지관은 '14년 체육관 수직 증축공사(예산금액 342,226천원)를 실시함에 있어 준공 대가 지급 시 보증 기간을 2년(2015.3.6~2017.3.5)으로 한 하자보수보증서를 청구하였으나, 건축물 중 주요 구조부는 5년, 소방 시설은 3년, 승강기는 3년, 지붕공사 3년 등으로 정한 「건설산업기본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 :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업무매뉴얼(시설공사편)

☞ 사례

- ***시설은 '14년 방수 및 도장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하자보수기간 1년으로 하자보수보증증권을 수취하였는데, 방수공사의 경우 하자보증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방계약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배 :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업무매뉴얼(시설공사편)

3) 하자보수 보증금

- 하자보수보증금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금융기관 등에서 발행한 보증증서**를 계약 상대방으로 하여금 제출 받도록 함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예외 :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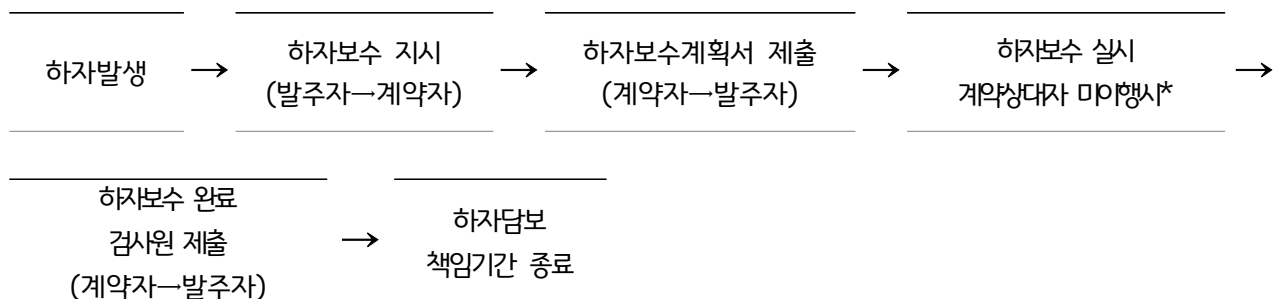
* 하자보수보증금률(「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 **조경공사(5%), 도로(포장)·상하수도관로·일반건축 등 공사(3%), 그 밖의 공사(2%), 용역(2%)**

☞ 사례

- ***쉼터의집에서는 계약보증금 면제대상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사기업인 A사와 계약금액 61,270천원에 '간이***클러 설치공사'를 계약하였음에도 계약보증금이나 하자이행 보증서를 받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여 '19. 1. 29. 준공하고, 감사에 지적된 이후인 '19. 4. 3. 하자이행 보증서를 제출함 :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업무매뉴얼(시설공사편)

4) 하자보수의 절차 및 방법



- 하자보수 미이행시

- 하자보수보증금 회수 및 직접 사용 :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여 회수 조치하거나,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
- 하자보수 보증기관에 하자보수 이행 촉구 :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연대 책임(하자보수) 이행 지시**

기능보강사업의 중요재산의 관리

가. 중요재산의 관리

1) 중요재산

- 중요재산의 종류 :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선박, 부표(浮漂),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항공기,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부동산 및 그 종물

- 국가보조금으로 신축하여 새로 취득한 경우
- 국가보조금으로 증축하여 기존건물의 규모가 확대되고 효용이 증가한 경우
- 국가보조금으로 건물을 개보수하여 그 효용이 증가한 경우(건물의 내·외부 도색, 방수공사, 창호교체 등 단순 개보수공사와 100㎡ 이하의 소규모 개보수공사는 제외)

□ 그 밖의 사항

- 국가보조금으로 구입한 단가 5백만원 이상인 장비·물품

※ 2021년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참조

2) 중요재산(부동산)의 부기등기

-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해당 부동산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다는 사항 등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 부기등기 표기내용

- 해당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 중앙관서의 장 : 보건복지부 장관(또는 처분 승인내용에 따라 경기도지사)

** 매각은 양도의 의미에 포함

☞ 사례

- **시는 ‘****’에서 2016년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시 장애인 공동생활 시설(아파트)을 2016. 11. 08.에 매입하고 **소유권 등기를 하면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으나 관련 사항을 확인하지 않음**,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에 대해 처분 제한 사항을 부기등기 하도록 “시정” 요구 : 경기도 2018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특정감사

3) 중요재산(장비) 관리

- 시설이 구매한 장비는 시설의 자산대장 등에 등재하여 관리
- 국고지원사업 장비는 국고지원으로 구매한 장비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비별로 관리 라벨 등을 붙여 표식토록 함
- 신규 구입하는 장비는 반드시 A/S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장비 구매 계약 시 계약서에 관련내용을 분명히 포함시켜야 함

4) 중요재산의 처분

-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구 분	내 용	비고
보건복지부 승인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 제공 행위	
시·도지사 승인	사업수행기관이 법인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 제공 행위	- 승인 후 보건복지부 결과보고
승인 없이 재산처분 가능	보조금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 승계취득 미포함 - 기간 미경과 재산 처분 시 중앙관서의 장과 반드시 협의

* 중요재산 표준 내용연수(기획재정부 20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분 류	구 분	내용연수
	대 상	
부동산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또는 강구조건축물	50년
	그 외의 건축물	35년
고가 동산 (5천만원 이상)	선박, 항공기	30년
	차량	20년
	그 외 기계류 등	15년
기타 동산	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동산	조달청 내용연수 + 5년

※ 부동산 중 토지는 내용연수 적용을 받지 아니함

기능보강사업 사후관리 대표 부적정 사례-1

☑ 기능보강사업 사후관리(하자검사) 부적정 사례

☞ 사례

- 기능보강 공사 도급계약체결 시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정하고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실시하지 않고, 하자보증금 또는 하자보증이행각서 또한 징구하지 않은 사례

☞ 관련규정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2(계약의 원칙)
 -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함
 -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지방계약법」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함
 -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 하자보수보증금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등

☞ 처분내용

- (주의)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산하시설 “사회복지시설 **** 원”에서는 기능보강사업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하자보증이행각서를 반드시 징구하여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도록 주의 조치하고, 동일 사례가 재발할 경우 행정처분 등 지도·감독 철저

* 출처 : 보건복지부 2020년 사회복지법인·시설 현지조사 사례집

기능보강사업 사후관리 대표 부적정 사례-2

☑ 기능보강사업 사후관리(중요재산) 부적정 사례

☞ 사례

- 사회복지법인 산하 장애인시설에서 자립생활 체험홈 목적의 기능보강사업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아파트)을 주무관청 승인 없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으로 용도 변경하여 무단 사용한 사례

☞ 관련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재산)
 -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증여·교환·임대 담보 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처분내용

- (시정) “사회복지시설 ****” 에서 기능보강사업으로 구입한 “*** 체험홈” 아파트의 무단 용도변경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원상복구 등 사후조치를 조속히 이행 요구
- * 출처 : 보건복지부 2020년 사회복지법인·시설 현지조사 사례집

06 참고서식

☑ 공사도급 표준계약서(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0.11.5>

공사도급 표준 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자	발 주 처	○ ○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성명								
	계 약 상 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 또는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주 소 · 전 화 번 호 								
계 약 내 용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금 원정(W)								
	총공사부기금액	금 원정(W)								
	계 약 보 증 금	금 원정(W)								
	현 장									
	지연배상금률	%								
	물가변동계약금액조정방법	. . . ~ . . .								
	착 공 연 월 일									
	준 공 연 월 일									
그 밖 의 사 항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의 경우 공종별 구분 기재)										
공 종	공종별 계약금액	<table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담보책임 존속기간</td> </tr> <tr> <td style="padding: 5px;">()% 금 원정</td> <td></td> </tr> <tr> <td style="padding: 5px;">()% 금 원정</td> <td></td> </tr> <tr> <td style="padding: 5px;">()% 금 원정</td> <td></td> </tr> </table>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담보책임 존속기간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담보책임 존속기간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p>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불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p> <p>불임서류: 1. 공사 입찰유의서 1부 2. 공사계약 일반조건 1부 3. 공사계약 특수조건 1부 4. 설계서 1부 5. 산출내역서 1부</p>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인)								
계 약 상 대 자		(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입찰 참가신청서(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11.5>

입찰 참가신청서				처리기간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즉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	. . .
	입찰건명			
입찰보증금	납부	· 보증금률: % · 보증금: 금 원정(W) · 보증금 납부방법: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지명)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귀하			신청인	년 월 일 (인)
구비서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수수료
	2.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없음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성명:	(인)	

210mm × 297mm(신문용지 54 g/m²(재활용품))

계약보증금 납부서(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0.11.5>

계 약 보 증 금 납 부 서			
입찰번호	제 호	입찰연월일	. . .
계약건명			
계약번호	제 호	계약(예정)연월일	
계약금액	금 원정(W)		
계약보증금액	금 원정(W)		
보증금 납부방법			
계약이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개월)		
위의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 .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p>상호 또는 법인명:</p> <p>주 소:</p> <p>대 표 자:</p> <p>주민(법인)등록번호:</p> </div> <div style="width: 45%;"> <p>전화번호:</p> <p>(인)</p> </div> </div>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귀하</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p>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p> </div> <div style="width: 45%;"> <p>성명: (인)</p> </div> </div>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서(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0.11.5>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서			
입찰번호	제 호	입찰 연월일	. . .
계약건명			
계약번호	제 호	준공 연월일	
계약금액	금 원정(₩)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내역			
공 종	공종별 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금액	담보책임 존속기간
	원정	()%금 원정	. . . ~ . . .
	원정	()%금 원정	. . . ~ . . .
	원정	()%금 원정	. . . ~ . . .
보증금 납부방법			
위의 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상호 또는 법인명:		전화번호:	
주 소:		대 표 자: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귀하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성명: (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 **수의계약 배제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배제사유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1. 5.>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공사별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1. 교량	①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③교량 중 ①·② 외의 공종(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 등)	2년
2. 터널	①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터널 중 ① 외의 공종	5년
3. 철도	①교량·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4. 공항·삭도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5. 항만·사방간척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6. 도로	①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 및 측구(길도랑)를 포함한다]	3년
	②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2년
7. 댐	① 본체 및 여수로(餘水路: 물이 일정량을 넘을 때 여분의 물을 빼내기 위하여 만든 물길을 말한다) 부분	10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8. 상·하수도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관로 매설·기기설치	3년
9. 관계수로·매립		3년
10. 부지정지		2년
11. 조경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년
12. 발전·가스 및 산업설비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공사	5년
	③①·② 외의 시설	3년
13. 기타 토목공사		1년

14. 건축	①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대규모소매점과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10년
	②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주요부분과 ①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5년
	③건축물 중 ①·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1년
15. 전문공사	①실내건축	1년
	②토 공	2년
	③미장·타일	1년
	④방 수	3년
	⑤도 장	1년
	⑥석공사·조적	2년
	⑦창호설치	1년
	⑧지 붕	3년
	⑨판 금	1년
	⑩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2년
	⑪ 철근콘크리트(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	3년
	⑫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2년
	⑬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3년
	⑭보일러 설치	1년
	⑮⑫·⑭ 외의 건물내 설비	1년
	⑯ 아스팔트 포장	2년
	⑰보 링	1년
	⑱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1년
	⑲온실설치	2년

비 고 : 위 표 중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검측대장(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19호)
 [별지 제19호 서식]

검 측 대 장

공사명 : ○○공사 공사감독자(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인)

공 종	검 측 부 위 (설계규격, 단위, 수량 포함)	검측일	검 측 내 용	합격 여부	검측결과 또는 입증자료

주) 매물부분은 사진 첨부

☑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sfms.or.kr)**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시스템**
SMALL FACILITY MANAGEMENT SYSTEM

[홈으로](#) [사이트맵](#) [로그인](#)

사업소개

안전점검

안전조치

현황 및 통계

정보마당

커뮤니티

소규모 생활기반시설의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니다.

로그인

아이디저장 | [회원가입](#) | ID/PW찾기

소규모취약시설검색

시설종류	전체	전체
시설위치	시도선택	시군구선택
시설명칭		

통합/직업 검색 SEARCH

시스템운영 국토안전관리원 건축성능관리실

- 건 축 : 055-771-4819
- 시스템 사용 : 055-771-4847
055-771-4916
- ID 발급 문의 : 055-771-4916

자주묻는질문 FAQ

Q 안전점검보고서 열람 방법?

A 로그인 후, 화면 상단 안전점검 메뉴의 안전점검보고서를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연결되며, 해당 시설의 보고서를 클릭해서 개별 보고서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안전점검 소개

GO >

?

안전점검 신청방법

GO >

+

회원가입 절차

GO >

⚖

법령 및 기준

GO >

📁

자료실

GO >

Q&A

Q&A

GO >

공지사항

- 2021년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공문 및 ... 2021-01-06
-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신청 마감 안내 2020-12-20
- 2020년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계... 2020-12-09
- DDos 공격대응 모의훈련 관련 시스템 안내 2020-10-28
- [중요]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제출 관련 시스... 2020-10-08
- 회원가입 오류 관련 안내사항 2020-10-07

보도자료

- [2020-06-10] 국토부, 한국시설안전공... 2020-06-10
- [2019-6-10] 한국시설안전공단, 장마철... 2019-01-03
- [2018-3-23] 강원총 이사장, 노인복지... 2019-01-03
- [2018-3-12] 문동주 이사, 소규모 취... 2019-01-03
- [2018-3-7] 한국시설안전공단 LH, ... 2019-01-03
- [2018-2-23] 한국시설안전공단, 해빙기... 2019-01-03

자료실

- 시설물 자율안전점검 안내서 2021-04-22
-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제출 시... 2020-12-04
- 조적조 건축물 점검 및 유지관리 안내서 2020-11-19
- 안전점검요령 및 자율안전점검 모바일 서비스 영... 2020-07-10
- 국민생활시설 안전점검 매뉴얼(2020) 2020-05-19
- 국민생활시설 안전점검 안내서(2019) 2020-05-19

법령 및 기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1-04-22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0-12-04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020-11-19
-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운영지침 개정(201... 2020-07-10
-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운영지침 개정(201... 2020-05-19
-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운영지침 2020-05-19

- 55 -

☑ 나라장터(www.g2b.go.kr)

나라장터 국가중앙전자조달
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

통합검색 [] 검색

사이트맵-원격지원 나라장터 환영사이트

입찰정보 | 수요기관 | 조달업체 | 나라장터 소개 | 신규이용자 등록 | 인증서 등록

입찰광고검색 | 조달청계약요청현황 | 계약현황 | 건적요청검색

07:00 ~ 20:00 사이에는 검색기간을 공고제시일자 최대 6개월, 개찰일자 최대 6개월 까지 가능합니다.(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업무구분: 전체 | 공고명: []

공고/개찰일: 공고일 [2021/04/14] ~ [2021/05/14] | ○ 최근1개월 ○ 최근3개월 ○ 최근6개월

기관명: ○ 공고기관 ○ 수요기관 | 참가제한지역: 전체 | 검색

공고번호: [] 검색 | 자세한 검색을 원하시면 →

나라장터서비스

- 부가서비스: 표준연계서비스 조달수수로 GUIDE-시방서
- 가격정보: 일반단가계약 시종거래물품
- 법령정보: 법령조회 | 훈령 | 계약예규 | 고시
- 계약범규 해석조회 | 부정당계재정보공개
- 계약규정검색 | 계약과정보공개
- 입종DB 및 근거법규 | 정부발용품매각정보

나라장터관련사이트

- 조달청, 종합소평물, 혁신장터, 벤처나라, 상충정보, 공사현장보행, 하도급자감어, 누리장터, 물품관리, 국유재산
- 온통조달, 공사참가예산, e-발주지원, 조달정보기반, 빅데이터, 하이브리드시스템 해외로달정보, 공공녹색구매
- 조달가격 위반행위 신고센터, 조달통,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유튜브

나라장터알림광장

-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 다운로드 (바로가기) →
- 공공기관 차영용 업무 및 스프레드시트 업무 '공동구매' 서비스 안내 바로가기 →
- 나라장터 실적증명 서비스 안내
- 민간수요자를 위한 누리장터 서비스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 저작권 및 공공데이터 이용정책 | 업체등록변경안내 | ISO20000인증수심내역

조달청 35208 대관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동신동 920) 정부대전청사 3층 대표전화: 1588-0800
© 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 All Rights Reserved.

나라장터 연계기관 [] 이동

☑ **나라장터종합쇼핑몰(shopping.g2b.go.kr)**

조달청 | 나라장터 | 벤처나라 | 혁신장터 | 디지털서비스

로그인 | 사용자등록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전체 카테고리 | 인증물 | 테마물 | 할인행사/기획전 | **조달가격신고** | 불공정거래신고

물품 | 서비스

- 도로/철도/시설
- 사무/교육/가구
- 섬유/의류/생활
- 소방/안전/의료
- 소프트웨어
- 식품류
- 운동/취미/악기
- 전기/기계/설비
- 전자/정보/통신/영상
- 조경
- 차량/운송/운반
- 토목/건축/자재
- 화학/시험/계측

조달청이 주관하는 2021년 나라장터

상생세일

최대 64% 할인

공지사항 '상품 카탈로그' 다운로드

2021. 4. 26 [월] - 5. 21 [금]

공지사항	물품공지사항
2021년 나라장터 상생세일 안내(상품 카탈로그 첨부)	2021/04/06
'조달가격 위반행위 신고센터'개설 및 신고방법 안내	2021/02/10
[알림] 종합쇼핑몰 카테고리 분류 개편 반영 안내	2021/02/09
[알림]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 평가 및 등급화 결과	2021/02/0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개정 안내	2021/03/08

다수공급자계약 구매공고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확인 및 희망 물품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고확인하기

고객센터

대표 1588-0800
일반 042-610-1200

원격지원 원격지원(콜센터)

QnA 바로가기

쇼핑도우미



